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3/1/4 통권 160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프로 CEO와 아마추어 CEO

2022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전액증여시의 증여세 비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12월말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초에 받는 성과급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2022년 결산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판매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액은 공급과세에서 제외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 戰略

<법인·개인의 주택·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시 각종 세금비교>

개념, 구분	개인의 주택취득	법인의 주택취득
필요·적격성	주거적격, 필수품, 1세대 1주택	법인주택은 부적격, 비업무용과 같이 취급
취득단계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 : 1%(6억 이하), 1~3%(6~9억), 3%(9억원 초과부터) · 2주택 : 8%(개편안 6% 비조정 지역 1~3%) · 3주택부터 : 12%(개편안 8% 비조정지역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은 주택보유수나 금액 구분 없이 12%임(8% 개편안) (법인 통한 주택의 과점규제차원)
재산세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주택 : 0.1%부터~3억 초과부터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같은 과세체계 (재산합산 과세되어 주로 최고세율이 적용됨)
중부세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이하 : 3억 이하 0.6%부터 94억원 초과시 3%까지 누진율 · 3주택부터 : 1.2%~6% 누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까지 : 3% 단일세율 · 3주택 이상 : 6% 단일세율
양도차익 세율 (주택양도 이므로 부가세 10%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단단계 누진세율 : 6%~45% (1년 미만 70%, 1~2년 60%) ·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 일반 세율 + 20%(개정예정) ·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 일반 세율 + 30%(개정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세율(20% 내외 + 지방소득세 10%) · 주택과 별장 : 일반 법인세 + 20% 추가 · 비사업용토지 : 일반 법인세 + 10% 추가 · 미등기 토지 : 일반 법인세 + 40% 추가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3년 1월 4일(수) · 주간제 1호 · 통권 제 1604호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04호 / 주간 1호

2023. 01. 04.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일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개인의 주택 비임무용부동산 취득·보유·양도의 각종 세금비교	표지
긴급시사해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전액증여시의 증여세 비교	2
CEO에세이	프로 CEO와 아마추어 CEO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 명세 - 대손채권 - 재화를 공급한 이후 시장상황 변동으로 사후 공급단가 조정시 매출에 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약정을 사후에 작성한다면 매출에 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6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12월말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초에 받는 성과급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 법인세 구간별 인하 폭 현황	10 11
직장인 Survival	성공으로 이끄는 상상훈련 10계명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업종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법안-5494, 2022.02.25) -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608, 2022.05.18)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올해 안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 부부 주식 20억미만시 비과세	15
마케팅 Tax consulting	판매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세무정보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과세 합리화	16 34
회계정보	- 2022년 결산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3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전액증여시의 증여세 비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증여 금액 구간	㉑ 전액단순증여	㉒ 부담부증여		비교판단
		부담부증여액	나머지 순증여	
5억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원 까지 10% • 초과 4억 원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금은 양도가로 하고, 취득원가 중 전세금 해당비율의 배분취득원가를 차감함. • 양도소득세율 최종구간은 38% 내외 (다주택은 중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금 이외 나머지금액은 증여세 부과 • 5억 이하이므로 세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㉑유리. 전액증여의 최고세율은 20%인 반면,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율이 40% 이상이므로 부담부증여거래의 총 세금이 더 많음.(과거 취득원가가 낮은 경우도 전액증여가 유리함)
5억 ~1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원 까지 10% • 초과 4억 원에 20% • 초과 5억 원까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금(양도가) - 취득원가 배분액 = 양도소득 누진세율 최종구간 약 45%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금 이외 나머지 차액은 증여세 부과 • 5억부터는 세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와 ㉒가 비슷 • 적용 증여세율은 30%, 부담부증여양도세율은 45% 이지만, 취득원가 해당액 차감되므로, 양도소득세 감소됨. • 전액증여세와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가 서로 비슷하게 계산됨

10억 ~ 3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억 원 까 지 10% • 초 과 4 억 원 에 20% • 초 과 5 억 원 까 지 30% • 초 과 20 억 원 까 지 40% 	양도소득의 누진세율 최고 49.5% 적용구 간	전세금이외 나머지 차액증여세 부 과 10 억 초 과 부 터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보다 유리해짐 ·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와 순액증여의 증여세로 2 구분되고, 양도소득원가가 적용되므로 양도세율 49.5%의 일부적용 · 전액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 아짐
30 억 원 초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억 원 까 지 10% • 초 과 4 억 원 에 20% • 초 과 5 억 원 까 지 30% • 초 과 20 억 원 까 지 40% • 30 억 원 초 과 금 액 은 50% 	양도소득의 누진세율 최고 49.5% 적용구 간	• 전세금 이외 나 머지 부 분 증 여 세 부 과 30 억 초 과 부 터 50% 최 고 세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가 유리 • 증여세율이 50% 적용 되므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로 2개로 세금이 배분하고, 양도차익은 100% 가 아니므로 대부분 부담부증여가 유리함 (단 부담부금액은 증여 된 것이 아니고, 향후 수 증자가 갚을 금액임

프로 CEO와 아마추어 CEO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준다.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프로는 자기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기 일에 변명을 건다. 프로는 여행가이고 아마추어는 관광객이다. 프로는 리더(Leader)이고 아마추어는 관리자(Manager)다. 프로는 평생 공부하지만 아마추어는 한때 공부한다. 프로는 강자에게 강하고 아마추어는 약자에게 강하다. 프로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아마추어는 돈을 소중히 한다. 프로는 사람이 우선이고 아마추어는 일이 우선이다. 프로는 창조적 괴짜이고 아마추어는 전략적 노예다. 프로는 미래 중심적이고 아마추어는 과거 중심적이다. 프로는 이끌기 위해 솔선하지만 아마추어는 주어진 직책에 안주한다. 프로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아마추어는 질서를 추구한다. 프로는 실수를 하고 아마추어는 실패를 한다. 프로는 웃지만 아마추어는 비웃는다. 프로는 삶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아마추어는 스펙과 직책으로 권위를 행사한다. 프로는 깨끗하게 책임을 지고 아마추어는 하찮은 명분으로 시간을 끈다. 프로는 정직, 청렴, 헌신을 지키고 아마추어는 허세, 핑계, 부패를 즐긴다. 프로는 스스로 성공을 이루고 아마추어는 세습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프로는 은퇴후에도 일이 있고 아마추어는 은퇴후에 잡일이 있다. 프로는 은퇴하고 아마추어는 은퇴당한다.

한국에서 통상화, 하이테크화, 민주화, 통합화는 진행형이다. 하이테크·6T는 정보테크(IT), 나노테크(NT), 바이오테크(BT), 환경테크(ET), 우주항공테크(ST), 문화테크(CT)의 통칭이다. 한국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건국 후 70여년간 한국경제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6~70년대에는 블루칼라(Blue Color)인 단순기능공의 생산성에 의존했다.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는 시골서 올라온 아가씨들의 바쁜 손놀림과 엄마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흰수건을 쓰며 노력한 열성에서 출발했다. 8~90년대는 화이트칼라(White Color)인 관리자의 역할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한국 해외건설업체들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건물과 도로, 바다의 제방과 비행장을 밤낮으로 일궈냈다. 이러한 건설현장은 한국의 본사와 멀리 떨어져있는 단독회사나 마한가지였으나 화이트

칼라와 블루칼라가 열성을 다해 목표를 달성해 내곤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골드 칼라(Gold Color)인 CEO의 창조적 노력과 기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CEO를 탐구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조명을 비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CEO상(像)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CEO들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지향할 바를 제시하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게 했으면 한다. 또한 예비 CEO들이 CEO를 바라보고 미래를 다짐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경영현장이란 빠르게 돌아가고 복잡하고 미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단명료한 현실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CEO는 프로여야 한다. ‘기업이 열 냇이면 CEO는 아홉 량’이라는 믿음으로 CEO를 깊이 알아가는 것은 기업을 알아가는 첩경이다. 가급적 남의 나라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의 현실적인 우리 얘기가 중요하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3일 (금)	12월 26일 (월)	12월 27일 (화)	12월 28일 (수)
미	달 러 (USD)	1276.10	1282.20	1276.40	1268.30
일	본 엔 (JPY)	963.68	965.40	961.04	950.18
영	국 파 운 드 (GBP)	1536.17	1546.46	1540.74	1525.45
캐	나 다 달 러 (CAD)	935.01	942.31	940.05	937.88
홍	콩 달 러 (HKD)	163.70	164.29	163.50	162.58
중	국 원 (CNH)	182.86	183.22	182.61	181.75
유	로 화 (EUR)	1352.67	1361.82	1357.71	1348.96
호	주 달 러 (AUD)	850.90	860.61	859.78	853.31
싱	가 폴 달 러 (SGD)	944.25	949.46	946.71	940.9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8.38	289.76	288.45	286.7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 명세

Q 저희가 급여시 일괄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지정기부금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역에 대하여 연말정산 교육이나 여태까지는 우리 연구원 이름으로 기부금 내역을 전송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노동조합비는 노조위원장 주민번호로 전송하고, 각출되어 연말이나 명절에 복지단체로 기부하는 금액은 그 해당하는 단체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급여에서 각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개인과 실제로 기부하는 단체와는 관련성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부터 재난성금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연구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은 해당단체가 아닌 연구원 명의로 신고를 해왔는데 갑자기 해당단체에게 개개인별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요구대로 처리하고 귀사의 질의에 포함된 유권 해석대로 각 직원들은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며, 추후 세무당국에서 기부금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해당 내용대로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채권

Q s차 회생채권 변제인가로 2.4억 채권중 03억 현금변제 나머지 주식전환후 감자(3:1)입니다. 우선 현금변제부터 들어왔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인가일) 출자전환채권 2.4 / 채권 2.4 선수금 0.3 / 대손충당금 1.4 대손상각비 1.1

A 미회수 채권 중 일부가 현금으로 변제된 경우는 해당 채권가액과 현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 0.3 대) 채권 0.3 추후 나머지 채권(2.4-0.3)금액은 주식전환시점에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재화를 공급한 이후 시장상황 변동으로 사후 공급단가 조정시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약정을 사후에 작성한다면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Q

<사실관계>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제품(상품)을 공급한 후 일정기일이 지난 뒤 도매상이 소매상에 제품(상품)을 판매할 때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단가를 조정해 주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위와같이 공급시기 이후에 판매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단가를 조정할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2. 가격 하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불확실 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공급단가 조정시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매출에누리로 인정 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 최초 공급시기에 사전약정 필요한지요? 또한 약정서 또는 계약서 문구에 구체적으로 조건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른 매출 에누리를 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되는지요?
3. 이러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일부거래처만 특약이 가능한지요?
4. (회계) 매출에누리 발생이 일부거래처에 비경상적으로 가끔 발생하는데 변동대가 총당 부채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A

수출금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증감사유가 확정되어 인보이스가 발급된 시점이 속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12월말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초에 받는 성과급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상담실 백종훈 차장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퇴직·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연초에 지급한다거나, 12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연초에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가 아닌 일반적인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바, 각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시키면 된다.

따라서 2022년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즉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내의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한 구체적 성과가 산정되어 각 종업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성과급의 실제 지급은 2023년 1월에 이루어지더라도 2022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도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외에 정성적 평가도 반영하여 각 개인별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2023년 1월이라면 2023년 귀속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명세서도 2024년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서일46011-10528(2003.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12월말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12월말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를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애매한데,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등 퇴직소득지급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해당 퇴직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2023년 1월 20일에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지급일인 2023년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의 다음 연도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12%	12%

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변화

구분	내용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율 완화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 연장(2년→3년) • 주택증여 취득시 기본세율(3.5%)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자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세율 완화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연장(2년→3년) •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배제 적용



법인세 구간별 인하 폭 현황

과세표준	개정	개정안
3000억원 초과	25%	⇒ 24%
200억~3000억원 이하	22%	⇒ 21%
2억~200억원 이하	20%	⇒ 19%
2억원 이하	10%	⇒ 9%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법인 수(2021 기준)

과세표준	신고 법인 수
0	439,153개
0~2억원	300,025개
2억원~5억원	54,404개(A)
5억원~200억원	39,266개(B)
200억원 초과	280개(C)
세제개편안 통과시 혜택 중소기업 수	93,950개(A+B+C)

※ 주 : 법인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 인하시 2~5억원 사이의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2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됨



성공으로 이끄는 상상훈련 10계명

1. 습관적으로 상상하라

매사 어떤 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굳이 불편한 것이 아닐지라도 깊이 관찰해 '문제점'을 일부러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습관적인 상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상력이 훈련된다.

2. 다양한 크기의 상상을 하라

허무맹랑할 정도로 원대한 상상까지 크기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로 변모한다.

3. 늘리고, 더하고, 빼고, 바꿔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상을 변화시켜 보라.

다양한 각도와 시선을 통해 기발하고 획기적인 상상이 가능해진다.

4. 기존의 것을 뜯개고, 나누고, 뒤집어 보라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도 100% 다 안다는 생각을 버려라.

다양한 관점과 시점으로 보면 새로운 상상이 적용될 공간이 분명히 눈에 띈다.

5. 기존 상상에 새로운 상상을 결합하라.

상상이 합쳐지면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하나의 상상에 다른 하나가 이상적으로 결합하면 그 효과는 100배가 될 수도 있다.

6. 행복한 나를 상사하면서 그 모습을 위한 상상을 덧입혀라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과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상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동력이 된다.

7. 상상을 글로 남겨라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메모하고 시각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억하고, 메모를 보면서 새로운 상상을 하는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

8. 글로 남긴 상상을 표현하고 그려 보라

그림이나 도표, 수식도 좋다.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은 불완전한 상상이다.

정확한 이미지가 그려질 때까지 상상하면 현실화될 확률이 훨씬 커진다.

9. 여러가지 상상을 연관해 유추하고 조립하고 분해하라.

한 가지보다는 두세 가지 조합과 연결을 통해 상상은 더욱 구체화된다. 끊임없이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변형시켜라.

10. 상상가들의 성공 작품을 디자이너 보라

화가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수천 장의 유명한 그림들을 모사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상 훈련을 꾸준히 해야 자기만의 상상을 할 수 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판매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1286, 2022.05.23

질 의

- 질의법인과 편의점 본사간 약정에 따라, 고객이 질의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담배기기 할인쿠폰으로 편의점에서 할인 구매(쟁점할인)시 질의법인이 편의점에 할인쿠폰 상당액을 지급(보전)하는 경우
 - ① 쟁점할인액이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② 쟁점할인액이 질의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신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

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법인-5494, 2022.02.25

질 의

- (질의1)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항제3호의 중견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2021.10.20.]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사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8381, 2022.04.12

질 의

-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함
- * 민법 839의2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전제

질의

-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1주택(A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득령 154㉔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남은 1주택(B주택)의 취득일인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608, 2022.05.18

질 의

- 아버지(갑)가 소유한 A주택과 아들(을)이 소유한 B주택을 교환에 따라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A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올해 안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 부부 주식 20억미만시 비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또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도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가족 합산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람도 인별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내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정부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서 주식 지분을 계산하기로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주식 지분을 나눠 가지고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타 친족 기준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특수관계법인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해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와 기준을 맞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 현황이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일(27일)까지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비상장사 감 사인 선임절차 단순화

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다. 다만 당기 초도감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 기한(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이 1천억~5천억원인 비상장사는 2023사업연도부터 규제완화 혜택이 즉시 적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2022-12

-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 ①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 ②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 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 ❶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 (현행) 10/20/22/25% →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정) 9/19/21/24%
- ❷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
 - (수 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 ❸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❶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 ❷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 ❶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 ❷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 * (현행) 5년 → (정부안) 적용기간 폐지 → (수정) 20년
- ②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 *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
- 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 ④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 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 * 수익사업소득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
- ⑦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 ⑧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
 -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 ⑨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⑪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⑫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 * (정부안) '23.4.1. 이후 적용 → (수정) '23.1.1. 이후 적용
- 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⑭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국세기본법

①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국기법 §3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부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채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ii)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채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input type="checkbox"/> 당해세 적용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채납액 소멸은 아님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국기법 §88)

정 부 안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수정이유 > 점진적 인상 추진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①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①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②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③ (열람절차) i)임대차계약전에 ii)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iii)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 (좌 동)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i)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개시일까지 ii) 예외신설 ▪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iii)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iv)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

(국징법 §11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추 가>	<input type="checkbox"/>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 (좌 동)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 < 수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 < 시행시기 > '25.1.1.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이상 등) 현행 유지 (소득법 §94 · 104 · 115 · 118의9, 소득령 §157 · 167의8 · 168 · 169 · 178의8 · 225의2 등)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4.1.1.~'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4.1.1.~'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법인세법

- ①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2억원 이하	9%
5~200억원		2~200억원	19%
200억원 초과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삭제>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②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50%이상</td> <td>100%</td> </tr> <tr> <td>30%이상 50%미만</td> <td>80%</td> </tr> <tr> <td>30%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률 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지분율</th> <th>익금불산입률</th> </tr> </thead> <tbody> <tr> <td>50%이상</td> <td>100%</td> </tr> <tr> <td>20%이상 50%미만</td> <td>80%</td> </tr> <tr> <td>20%미만</td> <td>30%</td> </tr> </tbody> </table>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	80%	20%미만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	80%																
20%미만	30%																
○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③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④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적용시기 특례(법인법 §30-§31의2-§42의3 부칙)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input type="checkbox"/>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 수정이유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 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기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상증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업영위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 4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이상 ~ 3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 → 6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 1,000억원</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 5년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 (자산 유지) 기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업영위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이상 ~ 3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억원</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기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②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78)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과세방식) 비과세 → 징수유예*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 (납세담보)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신 설>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정 등 신설 ○ (좌 동) ○ (좌 동)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다만, 사전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가산세 부과 ① (사전 신고)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반시 상속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② (자료 제출)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 * 위반시 상속세액의 1% 가산세 부과

< 수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input type="checkbox"/> 제외 대상 축소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종합부동산세법

① 다주택자 증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 증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input type="checkbox"/>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증과 폐지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2.7%	5.0%
법 인	2.7%	법 인	2.7%	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주세법

①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 (조정주기) 매년 조정 ○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input type="checkbox"/>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3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text{세율} = \text{직전연도 말 세율} \times (1 + \text{가격변동지수})$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교육세법

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의 시행시기 보완(교육세법 §5③·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 ○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규정 외 「법인세법」§40, §43 준용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 ㉡ 제외 ㉠ 보험기간 미경과분 →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 ㉡ 중도해약분 → 중도해약한 과세기간 ○ (시행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23년 신고분부터 적용
---	--

< 수정이유 > IFRS17 조기 적용기업 지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국조법 §34의2)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투과단체) ①+②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② 설립지국 세법상 ①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 (적용절차)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②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 수정이유 > 해외 투자시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 방지

< 시행시기 > '23.1.1. 이후 적용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적용기간 없음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②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 §28의4)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수정이유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30)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확대 ○ (좌 동)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조특법 §30의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input type="radio"/>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input type="radio"/> 50% 초과 → 50%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조특법 §30의6)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input type="checkbox"/> 적용한도 등 확대 <input type="radio"/> (적용한도) 100억원 →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업영위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이상 ~ 3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억원</td> </tr> </tbody> </table> <input type="radio"/> (세율)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기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조정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적용한도 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업영위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년 이상 ~ 3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억원</td> </tr> </tbody> </table> <input type="radio"/> (좌 동)	기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기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기간 단축 <input type="radio"/> 7년 → 5년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조특법 §7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input type="radio"/>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 (적용기한) '25.1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 (좌 동)
---	---

< 수정이유 > 체육단체 활동 지원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조특법 §95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상향 폭 확대 ○ (좌 동) ○ 12%·15%* → 15%·17%*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조특법 §99의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 건) ①·②·③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유기간) 3년 이상 ②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③ (가 액) 기준시가 3억원 (한옥 4억원) 이하 ○ (지원내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적용기한) '25.12.31.까지 취득분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좌 동) ②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③ (좌 동)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 (조특법 §100조의1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 (수동적 동업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 소득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input type="checkbox"/>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수정이유 >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 시행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조특법 §100조의3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적용기한) '2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25.12.31.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5)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 (적용기간) '24.1.1. ~ '25.12.31.

< 수정이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13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 (별도 면세한도) 술·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2병(2ℓ·\$400이하) - (담배) 200개비 ○ (적용시기) '23.4.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3.1.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국회심의 결과 반영

14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 (감면적용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 (적용기한) '23.12.31. <추 가> 	<input type="checkbox"/>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12.31.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지역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 (공제율) 10% ○ (공제한도)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10% → 20% ○ (좌 동)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관세법

① 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확대 등(관세법 §116)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제공 ○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①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②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③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경우 ④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제공가능 사유 추가 ○ (좌 동) (좌 동) ⑤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민간은행 등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과세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⑥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3.4.1. 시행

②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관세법 §233의2)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가능	<input type="checkbox"/>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 (출연·보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 가능 ○ (수행사업) 원산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원산지 검증 및 전문인력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정책·활용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②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 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 ○ (지도·감독)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

< 수정이유 > 원산지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

< 시행시기 > '23.7.1. 시행

③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322⑩~⑫)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 ○ (제공목적)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 ○ (제공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제공장소) 관세청 내 설치된 특정구역(분석센터) ○ (목적외 사용금지) 관세무역 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 사용금지

< 수정이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관세정책 평가·연구 지원

< 시행시기 > '23.4.1. 시행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기획재정부, 2023. 01

-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
-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 개요

▶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 기타주주 범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①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 ②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현 행	개정내용
본인이 최대주주	친족 -6촌혈족 -4촌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추 가>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친족 -4촌혈족 -3촌인척 -(좌동) -(좌동) 혼외출생자 생부·모 (좌 등)
본인이 非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삭 제>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22.12.29.*)이 보유기준임
 - * '22.12.30일은 휴장일

참고 1 **주요 QA**

1.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이유

-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친족,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 ① 본인이 소액주주이어도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되어 대주주로 과세되어 현대판 '연좌제' 라는 비판
 -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과 부모를 합하여 10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소액(500만원)을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과세
 - ②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사례: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총계
보유금액	500만원	500만원	9억원	9,000만원	10억원

⇒ 현재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

2. 기업오너 등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분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지배 및 과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유지됨
- 다만, 그 범위를 국민인식 변화,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 조정에 맞게 합리적 조정

3.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과세가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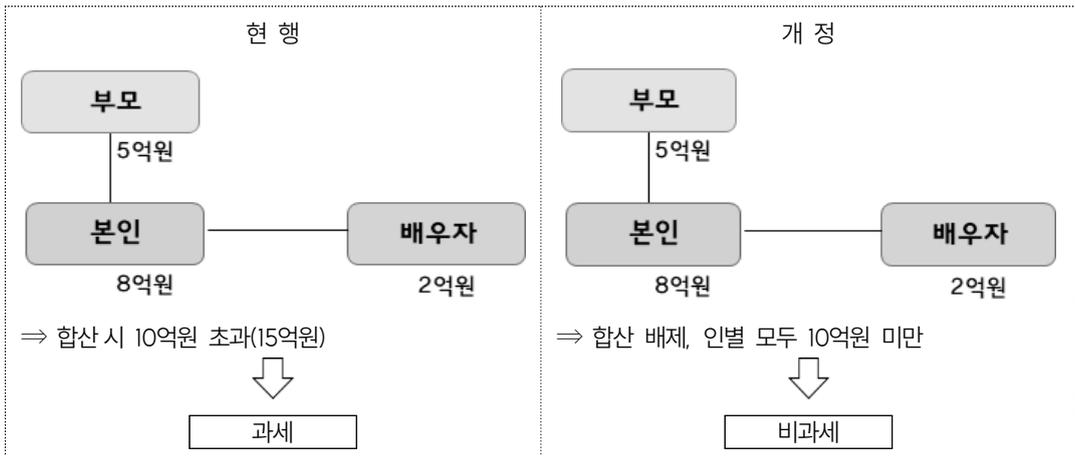
* (예) 본인 9.9억원, 배우자 9.9억원 보유시: (종전) 과세 → (개정안) 비과세

-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보아야 함
-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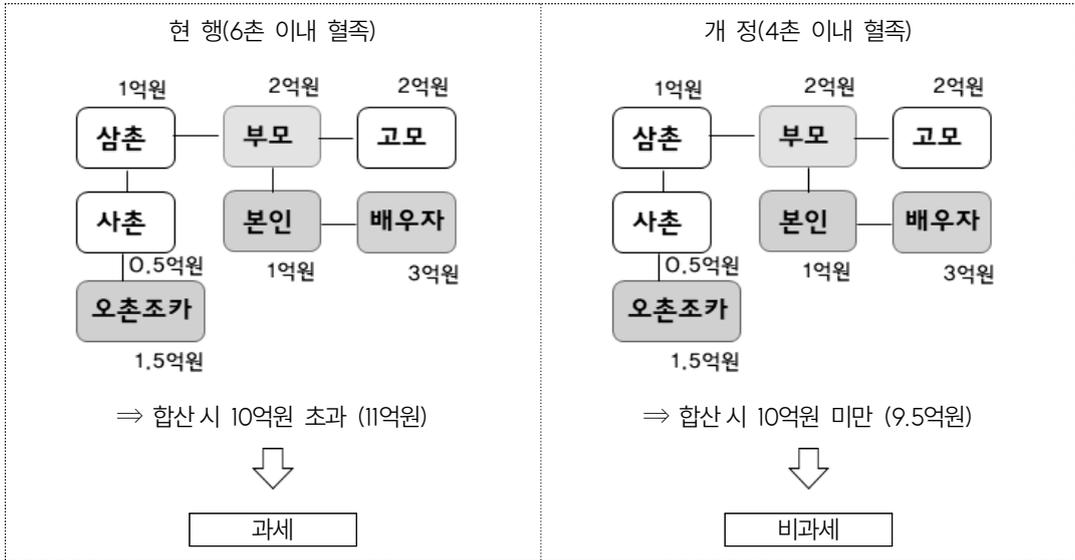
참고 2

기타주주 합산 과세사례(현행 vs. 개정 비교)

<非 최대주주>



〈최대주주〉



2022년 결산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2-12

주요 내용

-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은 자금흐름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③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④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합니다.
- ⑥ 감사절차별 감시시간, 인원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⑦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 위*에도 제출해야 함
 - *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 (상장법인)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제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 (점검 결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19~'20년 크게 증가

* (상 장 법 인) 49사('16년)→39사('17년)→49사('18년)→24사('19년)→24e사('20년)
 (비상장법인) 284사('16년)→107사('17년)→75사('18년)→182사('19년)→140e사('20년)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1.)에 따라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도 제출의무 부과

○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매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음

-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제출하지 않음

* ('18년) 49사 중 46사 → ('19년) 24사 중 24사 → ('20년) 24사 중 20사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사)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e
상 장	미제출	20	22	17	11	11
	지연제출	18	17	32	13	13
	부실기재	11	-	-	-	-
	위반 계	49	39	49	24	24
	사유제출			3	0	4
	총 회사수	2,097	2,167	2,244	2,324	2,345
비 상 장	미제출	113	55	29	86	62
	지연제출	164	52	46	96	78
	부실기재	7	-	-	-	-
	위반 계	284	107	75	182	140
	총 회사수	2,533	2,687	2,986	3,124	3,284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e
상 장	감사인 지정	2년	4	2	-	1	
		1년	19	9	12	4	
	경고		26	27	21	13	
	주의		-	1	16	5	
	조치없음		-	-	-	1	
	위반 계		49	39	49	24	24*
비상장	감사인 지정	2년	-	-	1	-	
		1년	31	14	3	7	
	경고		46	41	24	60	
	주의		70	52	47	115	
	조치없음		137	-	-	-	
	위반 계		284	107	75	182	140*

* '20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수준은 '23.1분기 중 확정 예정

유의사항

-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나 회계처리방법 자문 의뢰 금지
-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 ▶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참고] 주요 위반 예시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함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리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당겨져 3월 25일(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제출처 오인) 상장법인인 G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함
- (법규 인식 미비) 자산 1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2회계연도는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 이상) → '22년(1천억원 이상) → '23년(전체, 1천억원 미만 면제 예정)

①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② (감사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 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 (부정위험) 최근 대형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동 발간('22.12월)

유의사항

- ▶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
 - 자금횡령 등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점검
- ▶ (감사인)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산감사를 활용

3 내부회계 취약점 발견 시 적극 공시·개선

◆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운영실태·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
 - 경영진·내부감사인은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평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함
 - ※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 제재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외감규정 개정 추진* 중
 -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22.12.22.)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개선 관련 추진내용〉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음 □ (개선)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외감규정 개정 추진)
------	---

유의사항

-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 공시·개선



4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2.6월)한 '23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22.6월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23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 ① 수익 인식,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③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④ 사업결합

○ '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공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 ① (수익 인식)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비현금거래 등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③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④ (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하며,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5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 ◆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 과실 위반은 경조치(경고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오류 예방·정정)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여야 함
 -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의 중요한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 비교재무제표 수정 또는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을 결정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재감사 여부 및 감사주체, 당·전기 감사인 및 경영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2019년 개정)]
- (회계오류 자진정정 감경) 착오,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
 -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은 재무제표 감리로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1년 중 160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410회(재무제표 정정은 320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15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 * 전체 상장회사('21년말 2,487사)의 6.4%



유의사항

- ▶ (회사)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과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 ▶ (감사인) 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의 설계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 ▶ (공동)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된 자료의 수정 등*을 결정
 -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 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이 협의한 뒤,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 만을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6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 회사·감사인 모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의 적절한 투입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력과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수행하여야 함
 - 감사절차별 감사 소요시간, 참여 인원수 등은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 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문서화하여야 함
 -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지는 확인 필요
 - ※ ('21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점검대상 회사(2,721사) 중 63사*는 감사보수 및 시간을 누락하거나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

유의사항

- ▶ (회사) 감사시간, 인력 등의 투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정확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 (감사인)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을 정확히 산정·기재하여 제출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는 주요 질의회신 사례 및 과거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 주요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는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업무자료→회계→자료실→회계감독 동향자료에서 회계현안설명회 설명자료(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등 참조

[참고]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지적 사례

- A사는 지주회사 전환 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원가법 적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 B사는 관계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어 동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C사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배당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세효과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였으나, 배당세율 산정 시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고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D사는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잉여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여 연결자기자본 과소계상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배당·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

유의사항

- ▶ (공통) 충실한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질의회신및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적극 활용

II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